

회 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편집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이하 『연구』)의 편집(논문심사 포함)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수록내용) 『연구』는 한국독립운동사를 비롯하여 한국근현대사와 관련 되는 내용의 글을 아래의 형식으로 게재 또는 수록한다.

- (1) 연구논문
- (2) 학술적 평설(연구비평 및 서평)
- (3) 자료 및 자료소개 또는 현장답사기

제3조(발간회수) 『연구』는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등 년 4회 간행한다.

제4조(논문투고) 논문 투고의 자격과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투고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한국독립운동사 또는 한국근현대사 분야의 전공학자 및 관련분야 연구자로 한다.
- (2) 2월 간행 논문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5월 간행 논문은 3월 31일까지, 8월 간행 논문은 6월 30일까지, 11월 간행 논문은 9월 30일까지 투고해야 하며, 투고 논문은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제5조(편집위원회) 『연구』의 편집과 심사 업무를 전관하도록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운영내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1) 구 성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 간사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연구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2) 위원장 :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3) 임 기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회 의 : 편집위원회 회의는 년 4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5) 의 결 :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6) 역 할 :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① 지면 기획과 논문·평설·자료소개 등에 대한 집필 의뢰
 - ② 논문에 대한 1차·3차 심사 주관과 2차 심사위원 선임
 - ③ 6조 5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논문의 심사와 평설의 검토
 - ④ 심사 결과 확인 및 종합심의
 - ⑤ 기타 『연구』의 편집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협의·견의
- 제6조(심사절차) 『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비평 등을 다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1차심사 :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단, 연구 소 주최 학술회이나 월례연구발표회 등을 거친 논문은 1 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2차심사 :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내용의 학문적 수준과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 (3) 2차심사 결과 '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된 원고는 다음호 논문투고 기간까지 수정된 원고를 투고할 수 있으며, 1차심사는 면제한다.
- (4) 3차심사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수록 여부 와 재심사 여부를 판정한다.
- (5) 본 연구소의 요청 혹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에 의해 집필된 논문 등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 (6) 다음과 같은 성격의 글은 우선 게재도록 한다.
- ① 새로운 분야의 개척적인 연구
 - ② 새로운 방법론이나 이론을 제시하는 연구 또는 논평

- ③ 널리 도움이 될 새 자료의 발굴 소개
 - ④ 자료 분석과 해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
- (7) 심사의 제반 과정 및 결과는 간사가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도 그려하다.

제7조(심사결과)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개별 심사위원은 다음의 4등급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 ① A : 그대로 게재
 - ② B : 수정 후 게재
 - ③ C : 수정 후 재투고
 - ④ D : 게재 불가
-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하되, 수록 및 재심사 여부 등은 제6조 4항의 '3차심사' 결과를 따른다.
 - ① AAA, AAB : 즉시 게재
 - ② AAC, AAD, ABB, ABC, BBB, BBC : 수정 후 게재
 - ③ ABD, ACD, ACC, BBD, BCC, CCC : 수정 후 재투고
 - ④ ADD, BC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 (3) 편집위원회는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필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로 내려졌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수정 후 재투고'의 경우 다음호 논문투고 접수기간 내에 투고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득할 만한 반론을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반론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심사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편집자문위원),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1) 『연구』의 편집 방향
- (2) 간행된 『연구』의 내용에 대한 평가
- (3) 연구논총의 기획출판

제10조(소유권), 『연구』에 게재된 논문·비평문 등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12조(규정개정) 본 규정은 2000년 4월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03년 4월부터 시행한다(1차 개정).
- 본 규정은 2005년 8월부터 시행한다(2차 개정).
- 본 규정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3차 개정).
- 본 규정은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4차 개정).
- 본 규정은 2010년 8월부터 시행한다(5차 개정).
- 본 규정은 2011년 8월부터 시행한다(6차 개정).
-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7차 개정).
- 본 규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8차 개정).
- 본 규정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9차 개정).
- 본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10차 개정).
- 본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11차 개정).
- 본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12차 개정).
-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3차 개정).
- 본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14차 개정).

회 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 부정행위 범위)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결과의 발표 등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② (변조)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형·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통계, 연구내용과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기여한 사람에 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⑤ (이중게재) 다른 학술지 및 저서에 실린 연구결과를 그대로 혹은 약간 수정하여 투고하는 행위. 단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밝힐 경우 이를 자기표절 혹은 이중게재로 보지 않는다.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⑦ 기타 학계 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한국독립운동사연구』또는 본 연구소에서 발행 한 각종 연구결과물을 게재하는 경우 심사를 받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심의기관 및 판정) 이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을 심의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여부와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구소장이 선임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이 아닌 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안건의 조사 ·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심사기간)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
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9조(조사협조 의무)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이 학회의 연
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조사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제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의 관련한 윤리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와 그 관계자는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이의제기 및 소명의 권리)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서 작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된 저작 및 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402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2집

- 향후 3년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투고 금지

- 연구 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에 판정 내용 공시

-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
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
여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1차 개정).

회 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투고요령

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이하 『연구』로 약함)에 게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연구』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kimos.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원고 제출 시 논문에 본문, 주제어, 참고문헌, 국문초록을 포함해야 한다.
2. 원고분량은 원칙적으로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연구논평은 100매 이내, 그리고 서평과 자료소개는 40매를 기준으로 한다. 단 특집이나 기획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원고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 처음 표기될 때는 한자를 그대로 노출하고 기타 외국어는 원명을 괄호 없이 병기한다.
4.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의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명, 논문명, 책명, 권수 및 권호, 출판사명, 출판시기, 쪽수의 순서로 적는다. 모든 논문명은 「 」로 묶고 책명은 『 』로 묶는다.
예) ① 장세윤, 「조선혁명군정부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245~255쪽.
② 성주현, 『천도교청년당 연구』, 국학자료원, 2008, 30쪽.

(2) 신문·잡지의 경우 신문(잡지)명, 발행년월일, 문건(기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문건(기사) 인용 시에는 필자명,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년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예) ①『독립신문』1920년 12월 25일, 「북간도에 재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② 나월환, 「우리의 임무」, 『한국청년』 제1기, 1940년 7월 15일.

③ 조동걸, 「1920년 간도참변의 실상」, 『역사비평』 통권45호, 1998년 11월, 45~57쪽.

(3) 구미서적의 경우 논문명은 “ ”로 묶고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되 구미각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예) Deepak Kumar, “Racial Discrimination and Science in Nineteenth Century India”, *The Indian Economics and Social History Review* 19-1, 1982, pp. 66~69.

(4) 앞에 든 문헌과 반복일 경우에는 필자명, 논문명이나 책명, 쪽수를 표기한다.

예) 장세운, 「조선혁명군정부 연구」, 250쪽; 임종국, 『친일파를 응징하자』, 250쪽.

(5) 영인자료의 경우는 자료명을 쓰고, 뒤에 영인처와 영인시기를 부기한다.

예) 『국민보』 1~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5.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논리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문은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출처와 쪽수를 밝히고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인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예) ① 김인덕, 「일본지역 유학생의 2·8운동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15쪽(박경식 편,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1), 삼일서방, 1975, 99쪽에서 재인용).

② 「임시의정원 제6회 회의록」(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2004, 40쪽).

(3) 초판이 아닌 서적을 인용할 경우 ‘신수판’, ‘개정판’ 등을 밝힌다.

예) 임종국, 『일제하의 사상탄압(신수판)』, 평화출판사, 1994, 199~200쪽.

(4) 구절인 경우는 ‘ ’로, 문장일 경우에는 “ ”를 사용한다.

예) ‘자기들만을 위한 천국’으로 가려는 저들은 그는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라고 외쳤다.

(5) 특정한 개념이나 사실을 강조할 경우에는 ‘ ’를 사용한다.

6. 본문 중 책명·신문명, 작품명·조약 등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책명·신문·자료명 등은 『 』를 사용한다.

예) 『서울사람들의 이야기』, 『한성순보』, 『한인특고월보』 등

(2) 작품명·주제명·연설문제목 등은 「 」를 사용한다.

예) 「애국가」, 「돌아온 영웅」,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등

7. 연구논문의 맨 뒤쪽에 주제어를 붙여 논문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주제어는 국문과 영문을 동일하게 처리한다.

(1) 국문 주제어 : 김구, 임시정부, 3·1운동, 대한인국민회

(2) 영문 주제어 : Kim Koo, Prorisional Goverment, March First, Movement,
Korean National Association

8. 논문 체제는 본문, 주제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 순으로 한다.

* 주제어는 6~10개,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7매 이내로 한다.

* 참고문헌은 자료, 단행본, 논문 순서로 하되 필자는 가나다순으로 정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동양인, 서양인 순서로 한다.

9. 체제는 장이나 절로 구분하지 않고 1, 1), (1) 등으로 구분 표기한다.

10. 그 밖의 사항은 『연구』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2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5월부터 시행한다(1차 개정).